

● 사보발간및운영에관한세칙(030003)

제정 2004. 4. 20. 시행세칙 제110호
 개정 2005. 5. 19. 시행세칙 제145호
 개정 2005. 8. 11. 시행세칙 제150호
 개정 2007. 1. 29. 시행세칙 제189호
 개정 2007. 3. 28. 시행세칙 제208호
 개정 2009. 3. 27. 시행세칙 제269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보 발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3.28>

제2조(명칭) 공사가 발간하는 사보의 명칭은 “숫아라 경기!” 로 한다. <개정 05.8.11 09.3.27>

제3조(간행시기) 사보의 발간시기는 1년에 4회로 하여 계간지로 운영하며, 매분기 시작월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게재내용)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1. 고객참여 및 고객의견수렴과 관련된 사항
2. 경영목표 및 경영방침의 실현과 관련된 사항
3. 사업추진 및 계획과 관련된 사항
4. 기업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5.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게재의뢰) 위원회는 사보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원고를 대내외 인사 및 직원들에게 게재 의뢰할 수 있으며, 원고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배부대상) 사보는 아파트, 택지 등의 분양고객, 경기도내 각사군의 홍보, 건설, 주택 및 개발관련 부서 등 공사의 고객과 각종 이해관계자 및 기관에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보의 관리) 사보의 관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도서관리세칙에 의한다. <개정 07.3.28>

제8조(편집위원회) ① 사보발간 및 편집의 원활을 위하여 사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회의는 매분기개시 전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보발간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사장이 위촉하는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 사보운영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5.5.19, 07.1.29>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내용
2. 게재범위
3. 기타 발행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의 사전검토결과,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보운영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

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지급) 사보발간 편집심의회에 참여하는 외부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04. 4. 20>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5. 19>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8. 1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1. 29>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3. 28>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3. 27>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